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, 매각대금·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(안 제30조제5항)

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함

나.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(안 제40조제3항제 29호 신설)

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

다. 국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 명시(안 제42조제11항 신설)

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

중앙관서의 장등이 부담하되, 매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

라.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(안 제55조제1항)

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

마.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(안 제71조제3항)

변상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5항 전단 중 “연 6회”를 “연 12회”로 한다.

제40조제3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9.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 중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2회 이상 산출하고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증권 발행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4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⑪ 제1항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부담한다. 다만,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4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만, 제40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.

제55조제1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5백만원”으로 한다.

제71조제1항 전단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 ① ~ ④ (생 략)		제30조(사용료의 납부시기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
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만 <u>연 6회</u> 이내 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 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 청이 고시하는 이자율(이하 “고 시이자율”이라 한다)을 적용하 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.		⑤ ----- ----- ----- -----연 12회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⑥ (생 략)		⑥ (현행과 같음)		
제40조(처분의 방법) ① · ② (생 략)		제40조(처분의 방법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		
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 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 으로 한다.		③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		
1. ~ 28. (생 략)		1. ~ 28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	<u>29.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</u>		

증권 중 제44조에 따른 예정
가격을 2회 이상 산출하고 유
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
지분증권에 대해 지분증권 발
행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

④ ~ ⑥ (생략)

제42조(처분재산의 예정가격) ①
~ ⑩ (생략)

<신 설>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2조(처분재산의 예정가격) ①
 ~ ⑩ (현행과 같음)

⑪ 제1항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부담한다. 다만,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드는 비용을 그 신청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44조(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
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
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
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
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
격을 산출할 수 있다. <단서 신
설>

제44조(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)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. 다만, 제40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처분하

③・④ (생략) 제55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)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<u>1천만원</u>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② ~ ⑥ (생략) 제71조(변상금)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<u>제3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(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 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)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② (생략)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<u>100만원</u>을 초과하는	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.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제55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) ① ----- --- <u>5백만원</u>----- ----- ----- 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71조(변상금) ① ----- ----- -- <u>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50만원</u>-----
---	--

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 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 ④ · ⑤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165